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 제정된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고
- 0 경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안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의 내용이 고성군의 실정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0 문 : 기존 조례와 내용이 비슷하고 고성군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데 제정된 사유는
- 답 :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출입제한구역 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향후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코져 경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제정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0 1999. 7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